

재해사례

탱크 내부에서 작업하던 중 온열질환 추정으로 쓰러져

탱크 내부에서 작업하던 중 온열질환 추정으로 쓰러져

울산 소재 LNG 탱크 내부에서 바닥 청소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짐. 동료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작업자는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.

20일 넘게 이어지는 폭염특보가 사고 하루 전 해제되었으나 여전히 한낮 기온은 30℃를 웃도는 날씨였기 때문에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함

발생원인

◎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장 관리 미흡

- 온습도계를 설치하여 상시 온도측정 필요하나 미 실시
- 체감온도 기준하여 작업시간 조절 등 조치 미흡

◎ 온열질환으로 인한 조치 예방

- 작업 중 정기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 휴게시간 부여 미흡
- 작업자가 이상증상을 보이는 경우 체온을 낮추거나 탈수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수분을 상시 공급 가능하도록 해야 하나 미흡



<해당 상황>

탱크 내부에서 작업하던 중 온열질환 추정으로 쓰러져

재해예방 대책

- ◎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장 관리절차 강화
 - 기상청의 폭염특보 등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에 온습도계를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체감온도 기준하여 작업시간 조정, 온도기준에 따른 옥내 및 옥외 작업기준 마련 등 관리절차 강화
- ◎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 마련
 - 작업 중 정기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거나 이상증상 발견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체온을 낮추거나 탈수현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수분을 상시 공급할 수 있는 생수(또는 정수기 설치 등) 지급 등 조치 마련